

오산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

제정 2002년 3월 8일 훈령 제16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오산시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정보화 능력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전자정부시대 및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시 소속의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, 지도직, 별 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정기 및 수시평가) 평가는 매년 1회 정기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공고)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시기, 장소, 평가과목, 평가방법, 채점기준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가실시 30일전까지 평가대상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문서,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출제 및 평가) ① 출제와 평가는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이 실시한다. 다만,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출제수준은 직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,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평가과목 해당분야의 정보화교육을 충실히 학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
2. 실무에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
3.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문제
4.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문제 등

③ 평가는 응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실시하되, 장소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급별 또는 지역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평가과목) 평가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필기시험 : 정보화일반이론 및 컴퓨터 상식

오산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

2. 실기시험 : 문서작성, 스프레드시트, 정보망검색

제7조(평가방법 및 배점) ① 평가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하되 필기시험은 객관식 위주로 단답형을 병행할 수 있으며, 실기시험은 실무중심의 실습과제로 한다.

②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각각 100점으로 하고 배점비율은 40퍼센트와 60퍼센트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채점) 평가결과의 채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채점관이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채점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(결과통보등) ①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시험종료후 30일이내에 평가결과를 본인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결과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합격자결정 및 인정서 교부) 시장은 평가결과 과목당 40점이상,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정보화능력 인정서(별지 제1호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가점부여) 합격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시 직무수행능력분야의 정보화능력항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가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응시) ①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(별지 제2호서식)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응시표를 교부함과 동시에 시험장소, 시험과목 등 응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3조(다른기관 평가결과 인정) 다음 각호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한 합격자로 인정한다.

1. 정부전산정보관리소
2. 국가전문행정연수원
3. 한국정보문화센터
4. 자치정보화지원재단
5.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주관 평가시험

제14조(부정행위등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1년간 정보이용능력평가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한다.

오산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

1. 시험진행중 다른 사람의 내용을 참조하는 행위
2. 다른 응시자의 내용물을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
3.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
4. 기타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뚜렷한 행동을 한 경우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

[별지 제1호서식]

정보화능력 인정서

소 속
직 급
성 명

위 공무원은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향상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실시한 정보화능력평가에서 합격하였으므로 이에 정보화능력 인정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오 산 시 장

오산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

[별지 제2호서식]

응 시 원 서

오산시장 귀하

본인은 ()회 정보화능력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.

사진 (3.5×4.5cm)	소속			☎							
	직급		성명	(한글)							
				(한자)							
	응시 번호		주민등록 번호	-							

년 월 일

응시자 ☐

응 시 표			
()회 정보화능력평가시험			
응시 번호		직급	
성명	(한글) (한자)	주민등록 번호	-

사진
(3.5×4.5cm)

년 월 일

오산시장 ☐

